

지·면·보·수·교·육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병원에서의 산업재해 실태와 보상사례



최경숙 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

1. 들어가는 말

그동안 병원은 일반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어느 사업장 못지않게 환자보호자나 병원직원들에게 위험요소들이 잠복해 있는 곳이다. 병원직원들의 건강문제만 보더라도 전체 실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유통과 근육통, 간염 및 결핵 등 업무상으로 인한 많은 건강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조합은 실제 병원현장에서 느끼는 병원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접하는 일차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병원노동조합에서는 미흡하나마 병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개별 병원에서의 활동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서의 활동이 같이 추진되고 있다. 98년 2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라는 단일한 산별노동조합로 전환함으로서 이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2. 병원노동조합을 통한 산업보건활동

- 병원노동자의 건강실태조사와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상준, 154개 병원 3만 5천명)은 병원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면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기존에 전국적 실태조사나 연구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93년 41개 병원에서 병원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산업보건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유통 호소율이 60%(조리보조원의 경우 83%), 간염에 걸린 경우가 4%, 입사후 폐결핵에 걸린 경우가 7.6%, 만성피로감 46%, 소화계 질환 33% 등 건강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산업보건 활동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은 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히려 병원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무시

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안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병원사업장이 제외됨으로써 최소한의 법적인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95년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병원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공동요구로 하여 96년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이르렀다.

3. 산업재해 보상 사례

최근에 노동조합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병원사무직의 결핵성 늑막염의 산재 법원 판결

- 진주의료원 약제과 근무자의 산재 판결

000씨는 91년 진주의료원에 입사하여 약제과에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97년 12월 27일 높은 곳에서 약품을 내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으나 당시 임신여부가 불확실하여 초기에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하다가 98년 1월 30일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밝혀졌다. 31일 병원을 퇴직하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2월 5일부터 16일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다.

98년 3월 17일 재발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산재요양신청불승인 취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약제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육체적으로 무리한 업무를 하고 발병 직전에는 2-3일동안 밤늦게까지 장부정리, 재고정리 등을 하였고,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 근무하면서 처방전의 수납, 조제보조, 약품운반, 약품재고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종일 서서 업무를 해 왔고, 1일 2-3회 정도는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약품창고로부터 약품을 날라오는 등 육체적으로 무리한 업무를 하였고, 발병 직전에는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느라고 3-4일동안 밤늦게 장부정리, 재고정리 등으로 100여명의

외래결핵환자들과 접촉을 해왔는데 환자당 약 3분정도 대화를 해 왔다는 점. ▲ 86년까지 병원직원들 중 결핵성 질환에 걸린 사람은 간호사 4명, 조무사 2명, 사무직 1명 등으로 나타난 점. ▲ 결핵균감염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감염되는 것은 신체의 저항이 약화, 무리한 신체활동에 기인하여 발병하는 점 등 결핵균감염은 호흡기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재해로 판결한다는 결정이 났다.

이번 판결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는 업무이외에 종사하는 병원노동자들이 앞으로 산재 적용을 받게 되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례 2) 병원에서 과로사 판정

- 청주의료원 수술실 보조직 과로사 판정

고 000씨는 1983년 청주의료원에 입사하여 98년 3월 19일부터 수술실 근무를 시작하였다. 수술실에서 일주일 또는 격일로 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정상출근을 해야하는 근무조건속에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늘 피곤함을 호소했으며, 98년 10월 야간수술실 근무 도중 쓰러진 사례도 있었다.

그러던 중 99년 2월 6일 직원회식 도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어 대전을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22일 숨지게 되었다. (병명은 뇌출혈)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과로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3월말 과로사 판정을 받았다.

고 000씨의 업무는 수술실에서 주로 환자잡아주기 등 보조업무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8시간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콜 당직자로 항상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2인이 1주일씩 교대로 대기당직을 하였는데 1인당 2.5일에 한번꼴로 당직을 하였고, 당직에 다룬 수술건수는 15회 정도였다. 예를들면 99년 1월에는 당직일수가 16일이었으며, 당직건수는 10건, 수술건수는 13건이었다.

4. 당면한 문제점 및 한계

그러나 아직 병원에서의 산업재해 직업병보상 및

관리는 시작단계이며, 현재 몇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병원에서의 산재직업병을 대부분 공상처리나 개인 병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병원 경영자편에서 산재처리절차를 밟기보다는 소속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많은 경우는 치료기간이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소속 병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진단서는 아예 인정조차하지 않는다던가 진단서보다 치료기간을 단축할 것을 병원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병원노동자들 스스로도 복잡한 산재처리 절차나 병원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점이다.

둘째, 병원사업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재해 적용 기준이 없고, 산재적용 사례가 드물다. 병원사업장은 다른 곳과 달리 사고성 보다는 간염, 결핵 등의 감염성 질환과 요통, 근육통 등 사고성보다는 직업성 질환이 훨씬 많은 곳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빈발하는 간염이나 결핵 등에 대해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대부분이 적용받은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오히려 96년부터 새로이 적용된 병원사업장에 맞는 산재적용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서 병원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병원에서의 산업재해 실태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동부에 문의를 해도 병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건수나 보상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답

변을 들었을 것이다.

노동부가 산업별 중분류에 의해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의료업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는 모른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만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산업재해 관리를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사실상 노동조합에서는 산재보상보다는 단체협약을 통한 건강보호에 주력을 해 온 것이 현실이다. 가능한 산재보상법 기준이나 그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병원측에서의 인정 기준과 보상을 명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 입사이후 발병한 간염이나 결핵 또는 업무상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인정되는 질병, 출퇴근 시간에 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과 이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또는 100% 임금지급 등을 명기하는 조항들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재보상법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을 제대로 적용받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 많은 병원에서 노동조합이 없거나 분명한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병가처리되는 경우, 산재보상법에 의한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고 업무상 발병하는 산업재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정확히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